공연장 안전관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안전관리]

『공연장 안전관리』 콘텐츠에서는 공연장 무대시설 · 소방시설 안전관리, 공연장 건물 · 전기설비 안전점검 등 다양한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정보와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 및 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나아가 재해대처계획의 수립, 안전관리비 책정, 안전교육, 피난 안내 등 공연장 운영자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안전관리 1
1. 공연장 안전관리 알아보기 4
1.1. “공연장 안전관리”란? 4
1.1.1. 공연장 안전관리의 이해 4
2. 시설 안전관리하기 6
2.1. 무대시설 안전 6
2.1.1. 무대시설 안전관리 6
2.2. 소방시설 안전 9
2.2.1. 소방시설 안전관리 9
2.3. 그 밖의 시설 안전 13
2.3.1. 건물 안전점검 13
2.3.2. 전기설비 안전점검 15
2.3.3. 감염병 예방 조치 16
3. 안전사고 예방하기 18
3.1. 안전사고의 이해 18
3.1.1. 안전사고의 유형 18
3.2. 안전사고 예방조치 20
3.2.1. 재해대처계획 수립 20
3.2.2. 안전관리비 책정 21
3.2.3. 안전관리조직 설치 22
3.2.4. 안전교육 23
4. 안전사고 대처하기 26
4.1.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26
4.1.1. 사고 유형별 행동요령 26
4.1.2. 피난 안내 31
4.1.3. 중대한 사고의 보고 33

1. 공연장 안전관리 알아보기

1.1. “공연장 안전관리”란?

1.1.1. 공연장 안전관리의 이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안전관리

“공연”이란?

▪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해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연법」 제2조제1호 본문).

> ※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공연법」 제2조제1호 단서 참조).

“공연장”이란?

▪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위해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공연장운영자 등은 이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0조의2).

> ※ “안전관리”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

공연장 안전정보 관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정보의 관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12조의7제1항·제2항 및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제2항).

-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 「공연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함)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검사·점검 등의 결과

▹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

√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변경등록·폐업에 관한 정보

√ 「공연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 안전검사등의 결과를 「공연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 위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는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koss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안전관리하기

2.1. 무대시설 안전

2.1.1. 무대시설 안전관리

공연장 무대시설 관리

"무대시설"이란?

▪ "무대시설"이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 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기구를 말합니다(「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2조제1호).

▹ "무대기계·기구"란 공연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무대를 구성하기 위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2조제2호).

무대시설 안전관리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해당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4조).

무대시설 방화막 설치

방화막 설치 의무

▪ "방화막"이란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 참조).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항).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프로시니엄)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 공연장운영자는 위 2.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2항).

방화막 설치 예시



<출처: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안전 매뉴얼』(2023), 206쪽>

방화막 성능기준

▪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

-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2 제21호에 따른 방화막 설계검토 기준에 부합할 것

위반 시 제재

▪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3조제1항제5호의3).

▪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1항제3호).

※ 방화막 설치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공연법」(법률 제18855호, 2022. 5. 3. 개정, 2023. 5. 4. 시행) 부칙 참조]

- 방화막 설치에 관한 「공연법」 제11조의7은 2023. 5. 4.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2023. 5. 4. 이후 3년 이내에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공연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무대시설 안전진단

"무대시설 안전진단"이란?

▪ "무대시설 안전진단"이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무대기계·기구에 대해 설계검토·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자체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합니다(「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2조제5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종류 및 대상 등

▪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종류, 대상 및 검사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제12조제1항·제4항,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항 및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6조제2항 참조).

구분	내용	대상 규모	검사 주체
설계검토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공연장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무대시설의 구조 및 설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	무대 상부·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	「공연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전 안전검사	공연장 등록 전에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을 검사(정기 안전검사 기준 적용)	모든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검사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의 물리적 상태, 기능적 결함 등을 파악하고 그 결함 또는 위험의 원인을 조사·측정·평가(정기 안전검사 사항 포함)		
자체 안전검사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공연장 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9조제2항 참조).

구분	실시 시기
설계검토	•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등록 전 안전검사	• 공연장 등록 전
정기 안전검사	•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 등록한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안전검사	• 매년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에 검사 결과 기재)

※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

•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장 등록일 또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

• 정밀안전진단은 공연장 등록일 또는 직전 진단일부터 9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2조제3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제2호).

•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연법」 제12조제3항 후단).

위반 시 제재

▪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3조제1항제6호).

▪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2항제2호).

2.2. 소방시설 안전

2.2.1. 소방시설 안전관리

공연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

▪ 공연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2호바목·제3호가목 참조).

구분	내용
근린생활시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문화 및 집회시설	위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장

▪ 공연장운영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함)은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후단).

> ※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운영자는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 이하 같음)·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57조제1호).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공연장 물품 방염 처리

물품 방염 처리 의무

▪ 공연장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다음의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함)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제2호가목 및 제31조제1항).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 카펫
  - √ 벽지류(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제외)
  - √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 포함)
  - √ 암막·무대막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물품[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함]
  - √ 종이류(두께가 2mm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 합판이나 목재
  -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
  - √ 흡음(吸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 √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 방염대상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방염성능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57조제1호).

공연장 피난시설 등 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57조제1호).

공연장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비상구(非常口),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함)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22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자체점검의 종류 및 점검 횟수 등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

구분	내용	점검 횟수	점검 시기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연 1회 이상	1.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2. 그 밖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외 있음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2. 그 밖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그 밖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운영자는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소방시설 등에 대해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호).

※ 그 밖에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 소방안전관리의무 등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방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그 밖의 시설 안전

2.3.1. 건물 안전점검

공연장 건물 안전점검

공연장 건물 안전점검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공연장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7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

구분	대상 건축물의 범위
제1종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공연장 건축물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의 공연장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공연장 건축물
제3종시설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5천㎡ 미만의 공연장 건축물

안전점검의 종류

▪ 공연장운영자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제7호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제2호).

구분	내용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실시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안전등급의 기준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결과에 따라 건축물에 부여되는 안전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8).

구분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구분	A 등급	B·C 등급	D·E 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위반 시 제재

벌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3항제1호의2).

과태료

▪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제외)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1호).

> ※ 그 밖에 안전등급의 지정, 안전점검 후 조치사항 등 건물 안전점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건물 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전기설비 안전점검

공연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의무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등록신청 등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1호).

> ※ 전기설비의 종류
>
>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로 구분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참조).

전기설비 정기점검 의무

- 공연장에 설치된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받은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가목).

- 공연장에 설치된 자가용 전기설비(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본문 및 별표 4 제2호나목).

위반 시 제재

벌칙

-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50조).

과태료

-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 ※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건물 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3. 감염병 예방 조치

공연장 감염병 예방 조치

소독 의무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함)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8호).

- 위에 따른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본문).

소독 시기 및 횟수

- 공연장운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제8호).

소독 시기	소독 횟수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위반 시 제재

과태료

▪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3호).

> ※ 그 밖에 감염병 발생 시 신고 절차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안전사고 예방하기

3.1. 안전사고의 이해

3.1.1. 안전사고의 유형

공연장 안전사고의 유형

※ 콘텐츠 작성 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화재 사고, 응급 사고, 정전 사고 및 지진 사고 유형에 대해 안내합니다.

화재 사고

▪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 안전사고 사례집』(2023), 42~46쪽 참조].

사고 시점	사고 유형	사고 사례
무대 설치 및 준비 중	일반 화재	• 조명기 사용 중 색상지 종이 프레임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 • 리허설 중 무대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
	전기 화재	• 조명봉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 • 전기제어반의 점검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 • 디머의 과부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고
공연 중	일반 화재	• 공연 중 객석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 • 공연 중 조명으로 인해 커튼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 • 조명기 내 먼지 연소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고 • 폭죽이 시설물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
	전기 화재	• 무대 측면 콘센트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 • 조명기 전원선에서 과열이 발생한 사고
무대 해체 중	일반 화재	• 조명에 대한 부주의한 관리로 화재가 발생한 사고

응급 사고

▪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응급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 안전사고 사례집』, 42~46쪽 참조).

사고 시점	사고 유형	사고 사례
무대 설치 및 준비 중	넘어짐	• 관객이 로비에서 미끄러진 사고
	추락	• 조명 램프 교체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사람이 추락한 사고 • 연주승강무대 아래로 사람이 추락한 사고
	끼임	• 연주승강무대에 사람이 끼인 사고
공연 중	추락	• 가설 객석 바닥이 붕괴되어 관객이 다친 사고 • 배우가 무대장치의 고장으로 추락한 사고
	압사	• 무대 앞으로 사람이 몰리며 넘어진 사고 • 정원 초과 입장으로 관객이 부딪힌 사고
	끼임	• 무대 기계기구에 발이 끼인 사고
무대 해체 중	추락	• 가설무대 상부 구조물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

정전 사고

▪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정전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 안전사고 사례집』, 42~46쪽 및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2017), 67쪽 참조].

사고 시점	사고 유형	사고 사례
공연 중	정전	• 프레스 리허설 중 과부하로 인해 정전이 발생한 사고 • 변전소 노후화로 인해 지역에 정전이 발생한 사고 • 건물 전기시설 공사 중 단락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한 사고

지진 사고

▪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지진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 안전사고 사례집』, 14쪽,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45~46쪽 및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안전 매뉴얼』(2023), 320쪽 참조].

사고 시점	사고 유형	사고 사례
공연 중	낙하	• 지진으로 인해 객석 마감재가 떨어져 바닥으로 낙하한 사고 • 지진으로 인해 출연자의 머리에 평형추가 추락한 사고
	이탈	• 지진으로 인해 스피커 및 스피커에 고정된 와이어로프가 이탈한 사고 • 지진으로 인해 바닥 고정 볼트가 이탈하여 바닥재가 손상된 사고

※ 공연장 안전사고 유형별 관리자 대처방법은 이 콘텐츠 <안전사고 대처하기-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고 유형별 행동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안전사고 예방조치

3.2.1. 재해대처계획 수립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수립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재해대처계획의 내용

▪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5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공연장 규모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의무 대상

공연장 규모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참조).

구분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
500석 미만의 공연장	의무 아님	의무 아님	공연자 대상	의무
500석 이상의 공연장	의무	의무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공연자 대상	의무

재해대처계획 보완 의무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11조제2항 후단).

▪ 위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3항).

※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1항·제4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더하여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참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운영 정지 명령

▪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과태료

▪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2.2. 안전관리비 책정

공연장 안전관리비 책정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을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함)으로 계상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2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

안전관리비의 사용 용도

▪ 안전관리비는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보호장비의 구입
- 「공연법」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
- 「공연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
- 안전 관련 보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1호).

> ※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
>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2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
>
>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 이상
>
>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 이상
>
>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2호).

위반 시 제재

과태료

▪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않거나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2항제1호의2).

3.2.3. 안전관리조직 설치

공연장 안전관리조직 설치

안전관리조직 설치 의무

▪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3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 안전총괄책임자(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안전관리담당자(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관리조직 설치 기준

▪ 공연장의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2 제1호).

- 객석 수가 500석 이상 1천석 미만인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객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업무 관련 기록 및 보관 의무

▪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는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

> ※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3제1항,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
>
>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 √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안전총괄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위반 시 제재

과태료

▪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3항제3호).

3.2.4. 안전교육

공연장 안전교육

안전교육 실시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4제1항).

> ※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공연법」 제2조제3호).

안전교육의 대상자 및 교육시간

▪ 안전교육의 대상자별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

대상자	교육시간
공연자	•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 위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위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의 실시자

▪ 안전관리조직(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2항).

-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안전교육의 내용

▪ 안전교육의 대상자별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3항 및 별표 1의3).

대상자	교육내용
공연자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책임자	• 안전총괄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담당자	•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사항 • 무대, 조명, 음향 등 분야별 안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공연장 및 공연에서의 사고 사례와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4항, 제11조의4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참조).

※ 공연장 안전교육은 「공연법」 제12조의5에 따라 설치된 공연장안전지원센터(https://stagesafety.or.kr/)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교육 중 공연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공연장운영자의 안전교육 시행을 돕는 보조적인 수단이므로 공연자 안전교육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과태료

▪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3항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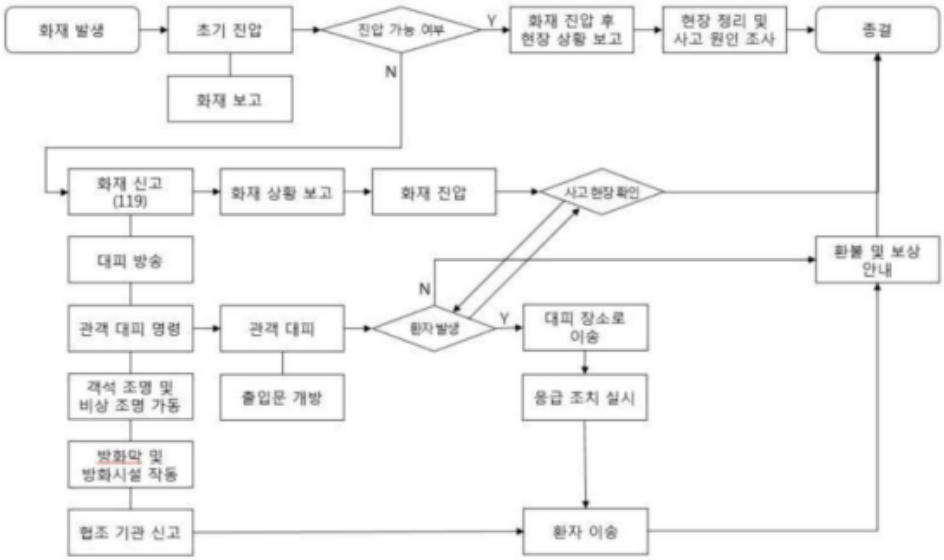
4. 안전사고 대처하기

4.1.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4.1.1. 사고 유형별 행동요령

화재 사고

화재 발생 시 대처 절차도



<출처: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안전 매뉴얼』(2023), 1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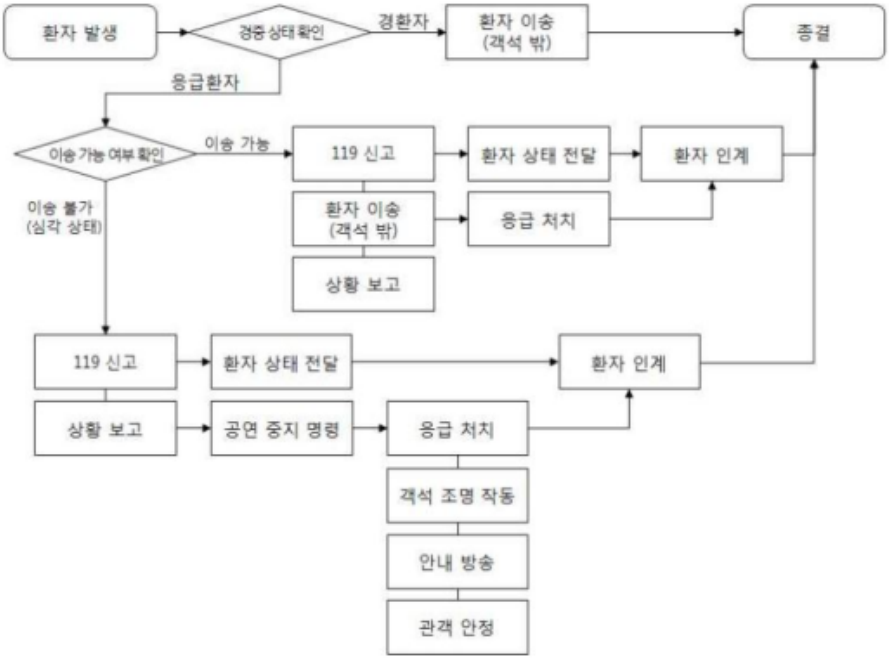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

▪ 화재 발생 시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장 안전 매뉴얼』, 131~134쪽 참조).

구분	대응 절차	행동요령
자체 진압이 가능한 경우	① 화재 진압 후 상황 보고	• 화재 현장의 환경 및 피해 상황을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총괄책임자는 보고받은 내용을 문서로 기록
	② 현장 정리 및 사고 원인 조사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정리 • 주요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보고 및 공연 중단 여부 결정 • 화재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하여 문서로 기록
자체 진압이 불가능한 경우	① 화재 신고 및 협조기관 신고	• 119에 화재 발생 신고 및 화재경보기 작동 • 협조기관(경찰서, 병원 등)에 화재 발생 신고
	② 관객 대피 명령	• 안전총괄책임자는 신고와 동시에 관객 대피를 명령
	③ 대피 방송	• 관객 대피 명령을 전달받은 담당 직원은 즉시 스피커 또는 육성으로 관객 대피 방송 실시
	④ 객석 조명 및 비상 조명 가동	• 관객 대피 명령과 동시에 객석 조명, 비상 조명 및 안전 유도 시스템 가동
	⑤ 방화막 및 방화시설 작동	• 관객 대피 명령과 동시에 방화막 및 방화시설 작동
	⑥ 화재 상황 보고	• 소방차 도착 전 소방차 진입로 정리 • 소방관에게 화재 발생 구역, 화재 상황 및 화재의 종류 등을 보고
	⑦ 관객 대피 및 출입문 개방	• 관객 대피 명령과 동시에 출입문 개방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유도 • 대피 완료 확인 후 출입문 잠그지 않은 상태로 닫고 퇴장
	⑧ 환자 이송	• 환자를 건물 밖으로 이송 •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 실시

응급 사고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절차도



<출처: 『공연장 안전 매뉴얼』, 136쪽>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장 안전 매뉴얼』, 137~139쪽 참조).

구분	대응 절차	행동요령
경환자	객석 밖으로 환자 이송	•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환자를 객석 밖으로 이송 후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총괄책임자는 보고받은 내용을 문서로 기록
준응급환자 (환자 이송이 가능한 경우)	① 환자 상태 파악 및 이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환자의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환자를 객석 밖으로 이송
	② 협조기관 신고 및 상태 전달	• 환자 이송과 동시에 119에 신고하여 응급의료지원 요청 및 환자 상태 전달
	③ 응급처치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 실시
	④ 환자 인계	• 구급대원에게 환자 인계 • 응급처치 실시자는 환자의 상태를 구급대원에게 보고 • 환자 발생과 관련한 정보를 문서로 기록
응급환자 (환자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① 환자 상태 파악 및 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환자의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의료지원 요청 • 환자를 넓은 공간으로 이동 후 안정적인 자세로 눕힐 것
	② 상황 보고 및 공연 중지 명령	• 환자 발생 사실과 환자의 상태를 안전총괄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총괄책임자는 공연 중지를 명령
	③ 응급처치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 실시
	④ 안내방송 및 관객 안정	• 환자 발생에 따른 공연 중지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안내 • 관객의 안정을 위해 객석 조명 점등
	⑤ 환자 인계	• 구급대원에게 환자 인계 • 응급처치 실시자는 환자의 상태를 구급대원에게 보고 • 환자 발생과 관련한 정보를 문서로 기록

※ 응급환자별 응급처치 요령은 『공연장 안전 매뉴얼』, 148~15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전 사고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

▪ 정전 발생 시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장안전지원센터,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2017), 55~63쪽 참조].

구분	대응 절차	행동요령
전원 복구가 가능한 경우	① 정전 발생 안내	• 비상 방송 또는 육성으로 정전 발생 사실 안내
	② 비상 대기 및 관객 안정 유도	• 안전관리요원은 비상 위치에서 대기 • 관객이 좌석에 침착하게 앉아 있도록 유도
	③ 객석 조명 및 비상 조명 가동	• 객석 조명 및 비상 조명 가동
	④ 무대 상태 점검 및 공연 재개 명령	• 안전총괄책임자는 전원 복구 후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고받아 공연 재개를 명령
	⑤ 공연 재개 안내	• 관객에게 공연 재개 안내 • 공연 진행을 위하여 착석 유도
전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① 정전 발생 안내	• 비상 방송 또는 육성으로 정전 발생 사실 안내
	② 비상 대기 및 관객 안정 유도	• 안전관리요원은 비상 위치에서 대기 • 관객이 좌석에 침착하게 앉아 있도록 유도
	③ 객석 조명 및 비상 조명 가동	• 객석 조명 및 비상 조명 가동
	④ 관객 대피 명령	• 안전총괄책임자는 관객 대피를 명령
	⑤ 출입문 개방 및 대피 유도	• 닫혀있는 모든 출입문 개방 및 관객 대피 유도 • 관객이 이동 중 넘어지지 않도록 육성으로 계속하여 안내 • 대피 완료 확인 후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퇴장 • 관객 귀가 안내
	⑥ 원인 조사 및 지원 요청	• 정전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긴급지원 요청

정전 복구 후 조치

▪ 정전 복구 후에는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과 공급으로 인해 무대시설 제어 장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대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66쪽 참조).

▪ 공연장 내 피해시설이 있는 경우 자연재해 또는 전기고장으로 인한 정전이 아닐 시에는 한국전력공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66쪽 참조).

지진 사고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

▪ 지진 발생 시 대응 절차별 관리자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32~39쪽 참조).

구분	대응 절차	행동요령
지진 발생 시	① 관객 대피 명령 등	• 객석 구조에 따라 관객을 대피시키거나 보호 자세를 취하도록 결정
	② 출입문 개방	• 출입문 근처에 위치한 직원은 즉시 출입문 개방
지진 발생 직후(본진이 멈춘 상태) 및 대피 완료 후	① 대피 명령	• 공연장 내 모든 사람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명령 • 관객 대피 시 벽 쪽으로 최대한 밀착하도록 안내
	② 인명 피해 파악 및 신고	• 대피 완료 확인 후 인명 피해가 없는지 파악하여 부상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지진 발생 후 조치

▪ 공연장에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형추, 리미트 스위치, 와이어로프 등 무대시설에 대한 육안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40~44쪽 참조).

4.1.2. 피난 안내

피난 안내

피난 안내 조치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5제1항).

피난안내도의 비치

▪ 피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1호가목·나목).

피난안내도에 포함돼야 할 내용

▪ 피난안내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1호다목).

-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 비상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피난안내도의 설치 방법

▪ 피난안내도는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1호마목).

피난안내도 예시



<출처: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https://kossis.or.kr/)-안내-공연장 안전정보-공연장 안전관리의무-피난안내>

피난의 안내

▪ 피난 안내는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하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2호가목·나목).

▪ 피난 안내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2호다목).

-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피난 안내 조치(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의 안내)를 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5제2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5).

위반 시 제재

과태료

▪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4항제1호).

4.1.3. 중대한 사고의 보고

중대한 사고의 보고

중대한 사고의 보고 의무

▪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1항).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제1항).

-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중대한 사고의 보고 방법

▪ 공연장운영자는 위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1항 및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5).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 발생 경위
- 사상자 등 피해 상황
-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 향후 조치계획

사고조사 협조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고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2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제2항 본문).

- 다만,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제2항 단서).

▪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위에 따라 중대한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6제1항 참조).

위반 시 제재

과태료

▪ 중대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3항제7호).